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02
----------	--------

제출년월일 : 2012.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용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안 제10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

나. 심의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
(안 제14조제7항, 제14조제8항)

-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심의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

다. 조례 본문 중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0736호, 2011.5.30)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2.10. 18 ~ 2012.11.7 (제출 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모든 위원에 해당,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수정(안 제14조)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위촉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 위촉 권고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2.11.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징수등”을 “징수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를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를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를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로, “연2회”를 “연 2회”로,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납부장소와 납부기한,”을 “납부장소와 납부기한까지”로, “취하여질”을 “취하여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개시”를 “납기가 시작되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징수 등) 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금액의”를 “납부금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를 “제1항에 따라 시설부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확보한 부지의”를 “설치부지가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행중인”을 “진행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등”을 “감정평가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납부금액의”를 “납부금액 중”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내지 3에 의하며”를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르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가계산등”을 “원가계산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도”로,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명”을 “5명”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위촉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회의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20조 중 “출석”을 “참석”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중”으로 한다.

제22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함께”를 “함께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u>한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u>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u> 2. “사업시행자”라 함은 <u>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u> 	<p>제1조(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u>서울특별시 마포구 -----</u> ----- ----- <u>징수 등</u> ----- ----- <u>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u> ----- ----- <u>관한</u> ----- ----- .</p> <p>제2조(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u>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u>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 ----- ----- .

현행	개정안
<p>제3조(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p>	<p>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 ----- ----- 제2조제2호 ----- ----- 해당 ----- ----- ----- ----- -----</p>
<p>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 ----- ----- ----- ----- ----- 서울특별시 ----- 마포구청장 ----- -----</p>
<p>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p>② 제1항에 따른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

현행	개정안
<p><u>가. 생활폐기물</u> <u>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u> <u>별 발생 예정량</u></p>	<p><u>가.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u> <u>외의 폐기물을 말한다.</u></p>
<p><u>나. 사업장폐기물</u> <u>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u></p>	<p><u>나.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6. (생략)</p>	<p>6. (현행과 같음)</p>
<p>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u>제4조</u>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 및 제9조 규정 등에 의거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p>	<p>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u>제4조</u>에 따라 ----- ----- ----- ----- 따라 ----- ----- -----</p>
<p>② <u>제1항</u>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u>착공시</u>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p>	<p>② <u>제1항</u>에도 ----- -----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 -----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 -----</p>

현 행	개 정 안
<p>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p>	<p>---- 연 2회----- ----- 납부하도록 ----.</p>
<p>③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6조(고지 등) ①구청장은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u>납부 장소와 납부기한</u>, 미납한 경우에 <u>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위법 또 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u></p> <p>②구청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 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 부하여야 한다.</p>	<p>제6조(고지 등) ① ----- ----- ----- ----- <u>납부장 소와 납부기한까지</u> ----- - <u>취하여야 할</u> ----- ----- ----- -----.</p> <p>② ----- <u>납기 가 시작되기</u> ----- -----.</p>
<p>제7조(징수 등) <u>가산금, 증가산금, 체납처분 등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 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한다.</u></p>	<p>제7조(징수 등) 사업시행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 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 칙」을 준용한다.</p>
<p>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①<u>납부금액의 폐기물처리</u></p>	<p>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① <u>납부금액 중</u> -----</p>

현 행	개 정 안
<p>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부지 소요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 -----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 소요면적에 대한 부지매입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설부지 ----- ----- -----.</p>
<p>1. <u>기 확보한 부지</u>의 경우는 소요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p>	<p>1. <u>설치부지가 확정된</u> ----- -----</p>
<p>2. 부지 매입이 <u>진행중인</u> 경우는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p>	<p>2. ----- <u>진행 중인</u> ----- -----</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감정평가 등</u>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p>	<p>④ <u>감정평가 등</u> ----- ----- -----.</p>
<p>제9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p>	<p>제9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p>
<p>① <u>납부금액</u>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와 <u>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비</u>를 포함한다.</p>	<p>① <u>납부금액 중</u> ----- ----- ----- 「<u>건설기술관리법</u>」 제27조에 따른 -----.</p>
<p>② 소요비용의 산정방법은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u></p>	<p>② -----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0조에</p>

현 행	개 정 안
<p>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법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설 건설 실적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p>	<p>따른 ----- ----- ----- ----- ----- ----- -----</p>
<p>③ 원가계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u>별표1내지 3에 의하며</u>,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구청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 ----- <u>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르며</u> ----- -- <u>그 밖의</u> -----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원가계산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⑤ 원가계산 등 ----- ----- -----</p>
<p>제10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u>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한다.</p>	<p>제10조(기금의 설치)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u> ----- ----- -----</p>
<p><신 설></p>	<p><u>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u></p>

현행	개정안
<p>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이 조례에 <u>의한</u> 납부금액</p> <p>2. (생략)</p>	<p><u>장할 수 있다.</u></p> <p>제11조(기금의 조성) ----- -----.</p> <p>1. ----- ----- <u>따른</u> -----</p> <p>2. (현행과 같음)</p>
<p>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p> <p>② <u>제1항</u>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 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12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u> 규정에도 ----- ----- <u>제4조제7항에 따라</u> ----- -----.</p>
<p>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u>각1인을 포함하여 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u>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구 본청의 국장 2명</p>	<p>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u>----- -----.</p> <p>② ----- <u>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사람을</u> ----- -----.</p> <p>1.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u></p>

현행	개정안
<p>2. 마포구의회 의원 2명</p> <p>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민간전문가 3명</p> <p>⑤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⑥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2. (생략)</p> <p>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p>	<p>라 한다) -----</p> <p><삭제></p> <p>3. ----- ----- 5명</p> <p>⑤ ----- -----</p> <p>위촉위원----- 하 되, 한 차례만 -----.</p> <p>⑥ ----- ----- 전 임위원의 남은 기간-----.</p> <p>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제15조(위원회의 기능)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p>

현행	개정안
<p>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 -----</p>
<p>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u>회의를 통할</u> 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위원회 업무를</u> 총괄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회의) ① (생략)</p> <p>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u>연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p>	<p>제1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연 2회</u> ----- -----</p>
<p>③ (생략)</p> <p>제19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u>간사 1인</u> 과 <u>서기 1인</u>을 둔다.</p>	<p>③ (생략)</p> <p>제19조(간사 등) ① ----- ----- <u>1</u> <u>명과 서기 1명</u>-----.</p>
<p>② (생략)</p> <p>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u>출석한</u>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내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0조(수당 등) ----- <u>참석</u>----- ----- ----- <u>범위에서</u> ----- -----</p>
<p>제21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u>지방재정법</u>중 <u>경리관과 징수관</u>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계,</p>	<p>제21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지방재정법</u>」 중 ----- -----</p>

현행	개정안
<p>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 ----- -----.</p>
<p>제22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 에 필요한 <u>별지 제1호 서식</u>의 기금관리대장 및 <u>별지 제2호 서식</u>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p>	<p>제22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 ----- ----- <u>별지 제1호서식</u>----- ----- ----- -----.</p>
<p>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u>출납폐쇄 후 80일</u>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u>함께</u>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 <u>출납폐쇄 후</u> ----- -----.</p> <p>② ----- <u>제1항에 따른</u> ---- ----- ----- ----- <u>함께 서울특별시</u> ----- -----.</p>
<p>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p>	<p>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u>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u> <u>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u></p> <p>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5조(시행규칙) ----- <u>시행</u>에 ----- -----</p>